보 건 복 지 부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에 대한 의견 조회

1.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을 반영한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귀 부(처·청)에 의견조회를 합니다.

2.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에 따라 2019.5.20일(월)까지 우리부 건강증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1부
2.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검토의견(양식)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각 부처 및 시도

주무관 박성진 행정사무관 전가은 건강증진과장 전결 2019.5.9. 정영기
협조자

시행 건강증진과-1851 접수 법무담당관-9595 (2019.05.10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618호 / http://www.mohw.go.kr
전화번호 044-202-2825 팩스번호 044-202-3937 / psj2009@mw.go.kr / 비공개(5)